

징계처분결과 통보서

| |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징계처분 대상자 | 성명 | 소속 | | |
| | | 직위(직급) | | |
| 관할 징계위원회 | | 위원회 개최 일시 | 년 월 일 | |
| 징계의결결과 | ※ 「소방공무원 징계령」 별지 제4호서식 의결 주문란에 기재된 내용을 말함. | | 다수 비위 경합 여부 | [] 해당함 [] 해당 없음 |
| 징계처분권자 (징계처분제청권자) | | 징계처분일시 | 년 월 일 | |
| 징계처분결과 | | | | |

「국가공무원법」 제7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징계처분결과를 통보합니다.

년 월 일

처분권자인 직인

유의사항

「국가공무원법」 제75조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징계처분결과 통보서의 내용(징계처분대상자의 인적사항, 관할 징계위원회, 징계의결결과, 징계처분권자, 징계처분결과 등)을 공개하는 경우 「형법」 제307조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.